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881
----------	-------

발의연월일 : 2025. 6. 17.

발 의 자 : 양부남 · 김한규 · 민병덕
민형배 · 박균택 · 박수현
윤호중 · 이광희 · 정진욱
조계원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어린이의 놀이문화 및 관련 업종이 점차 다양해짐에 따라 현행법상의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그 외의 놀이공간이 안전사고로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새로운 형태의 놀이공간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중대한사고 보고체계 및 미신고시설에 대한 제재수단 등 현행법상의 안전관리체계를 개선·보완하여 최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어린이 놀이활동중의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았으나 어린이놀이공간으로 활용되는 장소에 대해서도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안전관리를 의무화함(제2조제2호 등).

1)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았으나 어린이놀이공간으로 활용되는 장소에 대해서도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정의 조항을 개정하고, 해당 장소에 적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 방안으로서 '안전성평가'의 정의를 추가함(제2조제2호, 제2조제7의2).

2) 1)에 해당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안전성평가를 의무화하고, 그 밖에 시설 신고, 평가결과 보관 및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현행 어린이놀이시설에 적용되는 안전관리 의무를 일부 적용함(제11조제2항, 제15조의3, 제11조의2, 제17조제1항, 제31조제2항).

나.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중대한사고의 보고기한 등 세부절차·방법에 대한 위임 근거를 규정함(제22조제1항).

다.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한 후 신고하지 않고 이용을 하도록 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31조제2항제1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놀이터”를 “놀이터, 또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어린이에게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장소”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위험요인”을 “시설 결함에 의한 위험요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안전성평가”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유형을 식별하고 해당 사고를 유발하는 위험요소를 찾아내어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설치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자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 개시하기 전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제15조의3의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받기”를 “받거나, 제15조의3에 따른 안전성평가를 하기”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11조”를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관리주체”를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로 한다.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안전성평가 실시) ①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기·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성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성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③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성평가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위해요소가 해소되기 전까지 그 이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16조제1항”을 “제15조의3제1항, 제16조제1항”으로, “안전점검”을 “안전점검, 안전성평가”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해당”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아니한”을 “않거나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안전진단”을 “안전성평가, 안전진단”으로 한다.

1.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어린이놀이기구”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u>놀이터</u>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 ----- ----- <u>놀이터</u> , 또는 <u>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장소</u>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설치검사”라 함은 <u>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u> 유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6. ----- <u>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u> ----- ----- ----- ----- ----- -----.
6의2. (생 략)	6의2. (현행과 같음)
7. “안전점검”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	7. ----- ----- ----- ----- -----

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
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 설>

8.·9. (생 략)

제11조(어린이놀이기구의 설치)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는 자
(이하 “설치자”라 한다)는 「어
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
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
이놀이기구를 행정안전부장관
이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
다.

<신 설>

---- 시설 결함에 의한 위험
요인-----.

7의2. “안전성평가”라 함은 어
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
은 어린이놀이기구의 관리주
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
이놀이기구의 안전관리를 위
임받은 자가 어린이놀이기구
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유
형을 식별하고 해당 사고를
유발하는 위험요소를 찾아내
어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8.·9. (현행과 같음)

제11조(어린이놀이기구의 설치)

① -----

----- 설치하는 경우 행
정안전부장관-----

--.

②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는 어린이놀이기구의 설치자

	<u>는 해당 어린이놀이기구를 이용 개시하기 전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제15조의 3의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u>
제11조의2(어린이놀이기구의 신고) ① 설치자는 제11조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한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기 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어린이놀이기구의 명칭 및 설치 장소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12조(어린이놀이기구의 설치검사 등) ①설치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놀이기구를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15조(안전점검 실시) ①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의	제11조의2(어린이놀이기구의 신고) ① ----- ----- ----- -- 받거나, 제15조의3에 따른 안전성평가를 하기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어린이놀이기구의 설치검사 등) ①----- 제11조제1항-----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안전점검 실시) ①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기·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당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신 설>

시설의 관리주체-----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의3(안전성평가 실시) ①어린이놀이기가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기·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성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성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③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성평가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위해요소가

제17조(점검결과 등의 기록·보관) ① 관리주체는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2조(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①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31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해소되기 전까지 그 이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17조(점검결과 등의 기록·보관) ① -----
-- 제15조의3제1항, 제16조제1항-----
안전점검, 안전성평가 -----

---.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①-----
----- 대통령령으로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

②·③ (현행과 같음)

제3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어린이놀이시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u>아니한</u> 자 2.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u>안전진단</u>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보관하지 <u>아니한</u> 자 3. 4. (생략) ③ ④ (생략)	<u>설을 이용하도록 한 자</u> 2. ----- -- <u>않거나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u> --- 3. ----- -- <u>안전성평가, 안전진단</u>----- ----- 4. 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③ ④ (현행과 같음)
--	--